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금액) (제 17조 1항 관련)

위 반 내 용	관계법령	부과기준	한도금액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용계획 착수일로부터 아래 기간동안 방치 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용도나 형태로 이용한자(단, 관계법령·규정 등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심의 등에 소요한 기간은 산입 하지 않음)	법 제144조제2항 제2호		
가. 1년 미만		토지가격의 3/100	200만원이하
나. 1년 이상 2년 미만		토지가격의 5/100	300만원이하
다. 2년 이상		토지가격의 10/100	500만원이하

※ 부과기준 중 토지가격은 과태료부과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며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기 이전에는 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3. 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2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2월 23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102회(임사회) 제4차 위원회(2004. 3.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가. 제정이유

- 영등포구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 사용료 징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민의 심신단련과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체육시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의 징수규정을 정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시설유지관리로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방안을 규정(안 제15조, 제16조)
-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민대표와 전문가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창수)

- 그동안 우리 구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적절한 기준 없이 운영·관리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영등포구민체육센터의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90
----------	----

제출년월일 : 2004. 2. 13.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영등포구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 사용료 징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체육시설물의 설치(제1장 제3조)
- 나. 체육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제2장 제4조)
- 다.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의 위탁규정(제3장 제16조)
- 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제2장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9조
- 나. 관련부서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 반영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관내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 사용료”라 함은 전용 사용 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심신 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관리한다.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8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되 기타 행사는 접수 순으로 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등포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6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 16:00~18:00
2. 야간 : 18:00~22:00

제7조(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제3조의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중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1과 같다.

②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의 행사 및 경기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및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②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중 10 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③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중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전액 반환

④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지도자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체육활동의 지도를 위하여 각 분야 별로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물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철저한 시설 유지 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의 위탁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17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구청장은 체육시설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체육시설(제3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기 타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26-3 (신길근린공원 내)	
대림테니스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80 (대림체육공원 내)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 사용료		대 상	기본사용료 상한(1회)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4,000	16,000	32000	48,000	56,000	64,000	72,000
		청소년	3,000	12,000	24,000	36,000	42,000	48,000	54,000
		어린이	2,500	10,000	20,000	30,000	35,000	40,000	45,000
골프연습장		성 인	6,000	월 120,,000					
		청소년 (어린이)	5,000	월 100,000					
체력단련장		성 인	2,500	월 50,000					
		청소년 (어린이)	2,000	월 40,000					
테니스장		성 인	5,000	1일 1면 8시간 기준 40,000			조명시설 사용 시 해당 사용료의 10% 가산		
		청소년	4,000	1일 1면 8시간 기준 32,000					
체육관	개인 사용	성 인	3,000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대관 료	체육경기	150,000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 추가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1명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동절기(11월~2월)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함.					
		기 타	300,000						
수영장	대관 료	체육경기	280,000						
		기 타	560,000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 포함금액임.
3. 사용료 할증 및 할인
 - ①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음.
 - ②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3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음.
 - ③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액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 ④연간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음.